

춘천지방법원 2019. 2. 12 선고 2018나5398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19. 2. 12 선고 2018나53983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18. 9. 19 선고 2018가단55636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주원

담당변호사 이동건

피고,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

변론 종결 2018. 12. 11

판결선 고 2019. 2. 12

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. 9. 19. 선고 2018가단5563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6 . 3. 22. 접수 제 148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성지호판사 류하나판사 문지 용

별지